대한비과학회 학술상 규정

(2005. 9. 5. 제정)
(2008. 2. 1. 개정)
(2010. 1. 1. 개정)
(2014. 3. 9. 개정)

제1조(명칭)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비과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학술상은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을 통하여 대한비과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비과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(수정) 회원을 선정하여 격려함에 목적이 있다.

제3조(수여대상) ① 10년 이상 활동한 대한비과학회 정회원으로 평가대상 업적 범위의 기간 동안 Journal of Rhinology에 원저 2편 주저자(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) 제출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.
② 본 학술상의 수상은 평생 1회로 제한한다.

제4조(평가대상 업적의 범위) 시상 연도 5년전 1월부터 시상 전년 12월까지의 5년동안 신청인의 국내・외 학회 및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학술위원회가 평가한다.
1. 학회활동 :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과학회의 학회 임원 활동
2. 학술대회 발표 : 대한이비인후과학회, 대한비과학회 및 이비인후과 유관 국제학회에서 주저자로 구연 및 포스터 발표, 심포지스트, 패널리스트
3. 연구논문 : SCI, SCIE 등재 학술지와 Journal of Rhinology,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게재된 비과관련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 경우만 인정
4. 저서 및 역서

제5조(신청절차)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기간 내에 학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1. 신청서 : 소정양식
2. 학회활동과 학술발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3. 해당논문의 pdf 파일 또는 별책부록

제6조(심사) 본 학술상은 학술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.
1. 국내・외 학회 및 학술활동 : 30%
2. 연구업적 : 70%
3. 심사의 기준에 대한 세칙 및 세부지침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함.

제7조(시상) ① 본 학술상은 학회장이 대한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
②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.
③ 신청자가 없거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상금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.
④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8조 (삭제) <2014.3.9>

제9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②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삭제) <2014.3.9>